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3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 략)</p>	<p>제33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 <u>다만, 법시행령 제 26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6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 <p>① ~ ②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④ ~ ⑤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46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.</u></p> <p><u>④ ~ ⑤ (호변변경)</u></p>
<p><신 설></p>	<p><u>부 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